

정 관 운 영 규 정

이사회 의결	1980.06.21
개 정	2000.03.18
개 정	2003.03.29
개 정	2004.03.20
개 정	2005.04.01
개 정	2006.04.03
개 정	2009.04.03
개 정	2011.04.01
개 정	2013.04.05

제1조(목적) 본회 정관 제 39조 정관 운용 규칙에 따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임원의 선출) ① 차기 회장단 중 회장, 수석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현임 회장단의 임기완료 전해년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14인 이내, 감사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은 전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자와 유관단체의 장을 역임한 자도 포함한다.

제3조(이사회 종류/구성/소집) ①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를 두며, 효율적인 본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이사회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단,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③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재적 이사의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종류) 효율적인 본회 운영을 위해 전체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단회의,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회의를 운영한다.

제5조(회장단 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감사의 참석도 가능하다.

제6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부회장 및 감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참석도 가능하다.

제7조(각종 위원회 회의) ① 각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장단 회의와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회의가 있다.

② 위원장단 회의는 회장 또는 담당부회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성원) 회장단회의, 각종 위원회 회의는 해당자의 1/3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제9조(각종 위원회 종류) ① 상설 위원회로는 조경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도서발간위원회, 정원문화위원회, 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전시·포럼위원회, 여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기술·교육위원회, 대외협력

위원회, 시공위원회, 적산위원회, 감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선진기술위원회, 체육복지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정책위원회, 역사·문화위원회, 자재·개발위원회, 식물·생태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 선출 2개월 전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외에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촉) ①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전체 이사회 의 승인을 요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희망하는 회원들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인원을 결정토록 한다. 위원은 2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도 가능하다.

제11조(회원의 자격) ① 개인회원, 기업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 단회의 의결을 거친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비납부일로부터 시작한다.

③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할 수도 있다.

제12조(회비) 정관 제 34조 1항의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입회비

.정회원(개인회원) : 30,000원

② 연회비

· 고문, 명예회장 : 연회비 없음

· 회 장 : 6,000,000원

· 부회장 / 감사 : 1,000,000원

· 상임이사 : 200,000원

· 이사 / 기술위원 : 150,000원

· 자문위원 : 100,000원

· 정회원(개인회원) : 50,000원

· 정회원(기업회원) : 300,000원

제13조(사무국)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단회의에서 정한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

제14조(경사) ① 화환 또는 화분 1점

- 조경관련 단체의 정기총회,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 및 행사

- 본회의 고문 및 회장단, 감사의 본인 및 직계자손 결혼

제15조(조사) ① 화환제공

- 본회의 고문, 회장단, 감사, 자문위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의 사망

② 본 협회의 조기제공

- 본회의 상임이사, 이사, 기술위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의 사망

- 본회의 회원이 특별히 원할 경우(경비는 회원 부담)

제16조(시행일) 이 정관 운용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